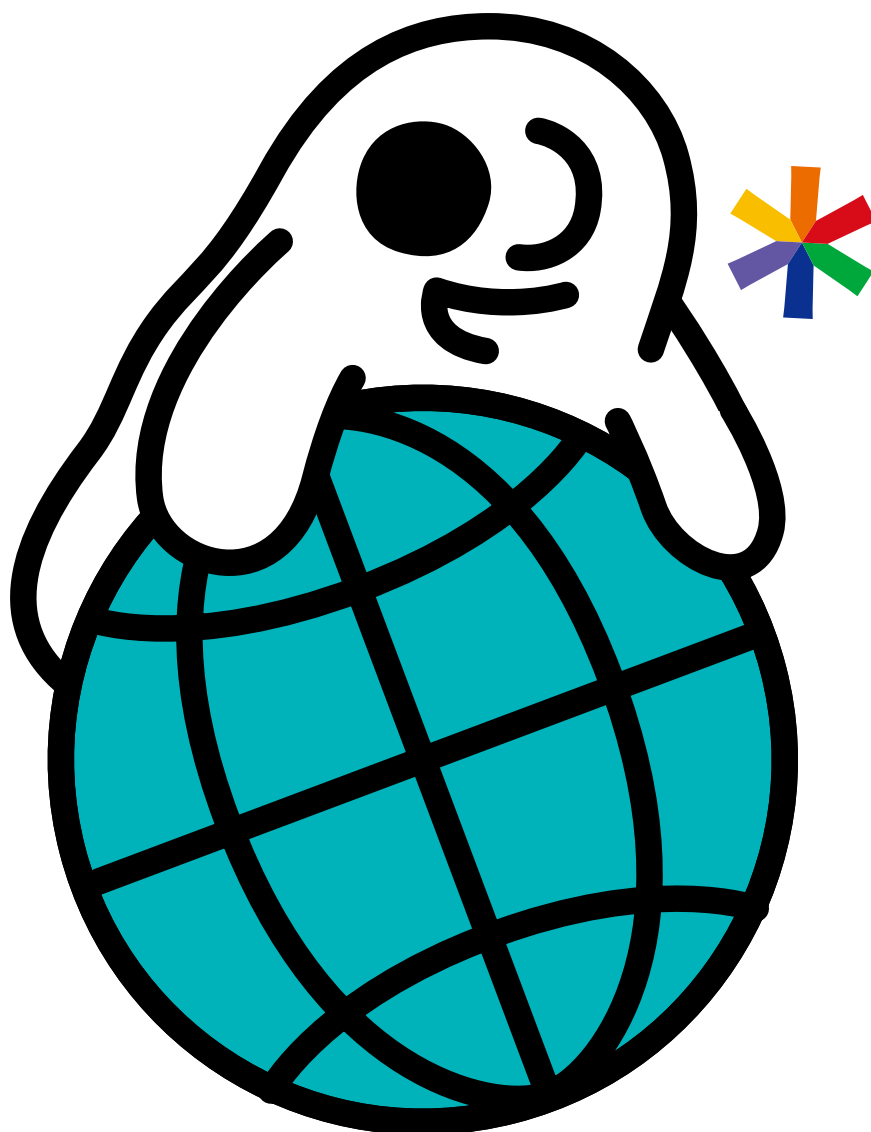




2021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① 2021 주요 변경사항	1
②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③ 원서접수	4
④ 전형일정	5
⑤ 지원자격	6
⑥ 지원자격 심사기준	7

⑦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1
재외국민	11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14
새터민	15

⑧ 전형방법 및 고사내용	16
⑨ 최종선발기준	18
⑩ 서류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	19
⑪ 지원자 유의사항	22
⑫ 합격자 발표	24
⑬ 합격자 등록금 납부	24
⑭ 등록금 환불	25
⑮ 전형료	26
⑯ 전형료 환불	26
⑰ 학사 안내	27
⑱ 본교 서식	28
⑲ 국민대학교 약도 및 교통편 안내	29

차 례

1 2021 주요 변경사항

1 재외국민 전형 외국 재학·근무·체류기간 자격기준 변경

지역	국가명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
학생 이수기간	보호자의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중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이수
체류기간	- 학생: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2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제출서류 변경

-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참고 (모집요강 11~15쪽 참조)

3 조형대학 면접고사 내용 및 배점 변경

모집단위	면접고사 내용 및 배점					비고
	기본소양 I	기본소양 II	작품집			
조형대학	25% (250점)	-	75% (750점)	작품수준	250점	[원서접수 시 작품집 제출 안내] ※ 원서접수 단계에서 면접 시 지참할 작품집을 1개의 PDF 파일(10MB 이내)로 변환하여 등록해야 함 (미등록 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전공지식	250점	[면접고사 시 작품집 지참 안내] ※ 면접 시 작품집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미지참 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 유의사항: 지원자 식별 가능한 표식 절대 금지 • 조형대학 작품집 규격 - 작품: 평면/입체작품 10점 이내 - 규격: 작품 1점당 A3 이내의 인쇄물/출력물 1장 기준
				표현력	250점	

4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실기고사 내용 및 배점 변경

실기내용	배점			비고
자유연기 독백, 혹은 연기적 표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 또는 움직임	100% (1,000점)	연기력	500점	※실기고사는 배경음악 및 반주 없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의상은 반드시 흰색과 검은색만 착용 가능함
		표현력	500점	



②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 열	대 학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학부 내 전공
			재외국민	초·중·고등학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새터민	
인 문	글로벌 인문·지역 대 학	한국어문학부	2	○	○	국어국문학전공 [※] /글로벌한국어전공
		영어영문학부	1	○	○	영미어문전공 [※]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영어전공 [※]
		중국학부	2	○	○	중국어문전공 [※] /중국정책전공
		한국역사학과 [※]	1	○	○	
		유라시아학과	-	○	○	
		일본학과	1	○	○	
	사회과학 대 학	행정학과 [※]	1	○	○	
		정치외교학과 [※]	1	○	○	
		사회학과	1	○	○	
		언론정보학부	4	○	○	미디어전공/광고홍보학전공
		교육학과 [※]	1	-	1	
	법과대학	법학부	1	○	○	공법학전공 [※] /사법학전공 [※]
	경상대학	경제학과 [※]	1	○	○	
		국제통상학과 [※]	2	○	○	
	경영대학	경영학부	4	○	○	경영학전공/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글로벌경영전공
		경영정보학부	1	○	○	경영정보전공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2	○	○	International Business전공
		재무금융·회계학부	1	○	○	재무금융전공/회계학전공
자 연	창의공과 대 학	신소재공학부	8	○	○	기계금속재료전공 [●] /전자화학재료전공 [●]
		기계공학부		○	○	기계시스템공학전공 ^{●●} /융합기계공학전공 ^{●●} /에너지기계공학전공 [●]
		건설시스템공학부		○	○	건설시스템공학전공 [●]
		전자공학부		○	○	융합전자공학전공 ^{●●} /전자시스템공학전공 [●] /지능전자공학전공 [●]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부	2	○	○	소프트웨어전공 [●]
	자 동 차 융합대학	자동차공학과 [※]	4	○	○	
		자동차IT융합학과		○	○	
	과학기술 대 학	산림환경시스템학과	5	○	○	
		임산생명공학과		○	○	
		나노전자물리학과 [※]		○	○	
		응용화학부		○	○	나노소재전공/바이오의약전공
		식품영양학과 [※]		○	○	
		정보보안암호수학과		○	○	
		바이오발효융합학과		○	○	
	건축대학	건축학부 [●]	1	○	○	건축설계전공(5년제)/건축시스템전공(4년제)

②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 열	대 학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학부 내 전공
			재외국민	초·중·고등학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새터민	
예·체능	조형대학	공업디자인학과	1	○	○	
		시각디자인학과	2	○	○	
		금속공예학과	1	○	○	
		도자공예학과	-	○	○	
		의상디자인학과	1	○	○	
		공간디자인학과	1	○	○	
		영상디자인학과	1	○	○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	○	○	
	예술대학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1	○	○	
	체육대학	스포츠교육학과※	1	○	○	
		스포츠산업레저학과※		○	○	
		스포츠건강재활학과※		○	○	
총 모집인원			56			

-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새터민의 (○)표시는 모집단위별로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합니다.
(단, 교육학과는 새터민만 1명을 모집함)
- 입학 후 주간 학부(과)와 야간 학부(과) 상호 간 전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 교육학과는 '사범교육학계열'로 운영되어 조건 충족시 전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 (※) 표시된 모집단위는 교직이 개설되어 있어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될 경우 교직과정 이수 후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 기준). 단, 학과·전공 신설 및 명칭 변경 등 대학 편제 개편으로 교육부 교직이수 승인이 취소되거나 교직 승인 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은 21세기형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전공 수업은 100% 영어 강의로 진행됩니다.
- (●) 표시된 창의공과대학 및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단일인증프로그램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 표시된 건축학부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으로부터 건축학교육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모집단위가 단과대학인 경우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최대모집가능인원 범위(입학정원 10%)내에서 해당 단과 대학별 전형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③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0.07.20.(월) 10:00 ~ 07.23.(목) 17:00(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2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별도의 원서 교부 및 방문 접수 없음)

3 접수절차



※ 접수 마감일은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마감시간 1시간 전에 미리 접수하여 지원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4 원서접수 유의사항

가.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접수취소나 지원 사항(전형유형, 모집단위 등) 수정이 불가능하니, 전형료 결제 전에 반드시 지원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수험표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만 출력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0.07.20.(월) 10:00 ~ 07.23.(목) 17: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admission.kookmin.ac.kr) •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고사장 및 고사시간 안내			2020.07.29.(수) 10:00 예정	• 개별 통보 없음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지정일시 및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개인별 지정일시는 변경 불가함
전 영 역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	필답고사 (재외국민)	2020.08.02.(일)	• 별도의 예비소집 없음 • 수험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 개인별 지정일시는 변경 불가함
		면접고사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새터민)	2020.08.01.(토)	
	조형대학	면접고사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새터민 포함)	2020.08.01.(토)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실기고사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새터민 포함)	2020.08.01.(토)	
서류제출 대상자 안내			2020.08.10.(월) 10:00 예정	• 개별 통보 없음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서류 제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함
서류제출 기간 (필답, 면접 및 실기고사 합격자)			2020.08.12.(수) ~ 08.14.(금)	• 등기우편(국내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방문제출 - 추후 공지 예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최초 합격자	발표		2020.09.25.(금) 17:00 예정	• 개별 통보 없음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함
	예치금 납부		2020.12.28.(월) 09:00 ~ 12.30.(수) 16: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납부
총원 합격자	발표		2021.01.01.(금) ~ 01.04.(월)	• 총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함
	예치금 납부		2021.01.01.(금)~01.05.(화)	
등록금 완납			2021.02.08.(월) 09:00 ~ 02.10.(수) 16: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납부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에 공지하니, 수험생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간 내에 지원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안내

입학
안내

입학
안내

⑤ 지원자격

| 외국 재학·근무·체류기간 자격기준 |

가. 재외국민(56명 모집)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격 기 준						
자 격 구 분	자 격 요 건	최소 해외 재학·근무·체류 기간				
		학생		보호자 (부 또는 모)		보호자의 배우자 (부 또는 모)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재외국민의 자녀 • 해외근무 공무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 해외 파견근무자 •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 포함) • 자영업자 • 선교사	3년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3/4	3년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2/3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2/3

1) 학생재학기간: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재학한 기간

2) 외국근무기간: 재직증명서상 근무 시작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출국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재직증명서상 근무 종료일과 최종 귀국일 중 이른 날 까지 해당국에서 근무한 기간

3) 외국체류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당국 체류일수를 합한 기간

※ 1년 2학기제 기준이며 1년은 365일 기준으로 모든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3년=1,095일)

나.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정원 제한 없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다. 새터민(정원 제한 없음, 단, 교육학과는 1명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지원자격 심사기준

1 공통 안내 사항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수학기 인정 사례>

(사례 1)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 누락 <자격 인정>
학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국내																									
	외국																									

※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은 1개 학기까지 인정

(사례 2)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중복과 누락 <자격 인정>
학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국내																									
	외국																									

※ 학제 차이로 1개 학기를 초과하여 국내와 외국학교의 재학 학기가 중복된 학기는 학제 차이 또는 월반으로 인하여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보충하는 학교 과정으로 간주하여 이를 외국학교 재학 학기로 인정

(사례 3)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국내와 외국학교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자격 인정>
학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국내																									
	외국																									

※ 전·입학 및 편입학 시 학제 차이로 인하여 국내와 외국학교 간 재학 학기가 2개 학기 이상 중복된 경우는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외국학교 재학 학기로 인정

⑥ 지원자격 심사기준

<이수학기 불인정 사례>

(사례 1)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2개 학기 누락 총 22학기 이수 <자격 불인정>			
학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국내																												
	외국					← 대 체																							

※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 중복으로 누락 학기 중 1개 학기를 대체하였으나, 국내와 외국학교 전·입학 및 편입학 과정에서 2개 학기 누락으로 자격 불인정

(사례 2)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2개 학기 누락 총 22학기 이수 <자격 불인정>			
학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국내																												
	외국					←								←															

※ 전·입학 및 편입학 시 학제 차이로 인하여 국내와 외국학교 간 재학 학기가 2개 학기 이상 중복된 경우는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외국학교 재학 학기로 인정하기 때문에 2개 학기 누락으로 자격 불인정

2 재외국민 지원자격 심사기준

가. 해외근무자

- 해외근무자란 역년으로 통산 3년 (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를 말합니다.

나. 해외근무자의 자녀

- 해외근무자의 자녀는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 (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해당기간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를 말합니다.

다. 해외재학기간

- 지원자의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은 보호자의 외국 근무 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봅니다.
- 1개 학년이 3term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1,2term을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2,3term을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합니다(3개의 term을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 1개 학년이 4quarter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1,2quarter를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3,4quarter를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합니다(4개의 quarter를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학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⑥ 지원자격 심사기준

- 외국학교에서 단순 어학 수업만 이수 한 학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예, ESL과정, 어학연수 등).
- 새터민은 외국학교 재학기간과 무관합니다.

라. 학생/부모 체류 및 보호자 근무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 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부모의 근무국에서 자녀의 인정기간과 동일하게 거주 및 근무(고교 1개 학년 포함 통상 3년 이상)해야 합니다(근무/체류/재학이 중첩되는 기간만 재외국민 지원자격 기간으로 산정).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 근무 및 체류기간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근무기간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시작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출국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종료일과 최종 귀국일 중 이른 날 까지 해당국에서 근무한 기간
체류기간	근무와 재학이 중첩되는 기간 내에서 해당국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 세금납부 증빙서류는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부 지원자격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은 부모의 자격과 무관합니다.

3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 심사기준

가.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나.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영향
안
내

영향
안
내

영향
안
내

⑥ 지원자격 심사기준

4 외국학교 인정기준

- 외국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학교는 해당국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만을 인정하며,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호자(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에 한하며, 보호자(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체제(공산권 국가 등)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국 수학인정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 우리나라의 학년도가 끝나는 2021년 2월 말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합니다.
※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1년 2월 말일로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한국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인정함.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새터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해외 근무기간 및 체류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해외근무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7 세무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재외국민 (56명 선발) |

제출서류 (공통)

- ① 서류심사 신청서(본교서식)
- ②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학년 및 재학기간(전입·전출일자 포함) 기재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0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최종학기 성적이 반영되어 있는 성적증명서 제출
 - ※ 재학기간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재학(사실)증명서 제출
- ③ 외국학교 학사일정(School Calende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 ※ 해당 외국학교의 학기 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 가능(홈페이지 출력 시 웹사이트 주소 표기)
- ④ 학력조회 동의서(본교서식, 본인이 재학한 외국소재 중·고교 수 만큼 작성)
- ⑤ 출입국 사실증명서 (학생 및 부모)
- 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학생 및 부모)
- ⑦ 여권사본 (학생 및 부모)
- ⑧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⑨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학생 및 부모)
- ⑩ 근무자 재직증명서 (자영업자의 자녀 제외)
 - ※ 재직증명서에 해외근무기간 명시
- ⑪ 부모 이혼 시 부모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입양 시 입양관계증명서
- ⑫ 제3국 수속인정서 (해당자)

※ 해외에서 발급하는 ②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와 ⑩ 근무자 재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사서인증 불가)’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모집요강 19~21쪽 참조)

※ 코로나-19로 인한 휴교·휴업 기간에 대하여 이와 관련한 소명 자료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재직·재학·체류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모집요강 19~21쪽 참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해외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1-1.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가.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 ※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나.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⑬ 재외 한국학교 교사의 경우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
 -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공문이나 인사기록카드 등

7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2. 해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가.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해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 법인 또는 지사 설립이 되지 않은 곳에 단순 파견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외 파견근무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나.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⑬ 해외지사설치인증서 사본 또는 해외직접투자승인(허가)서 사본 (원본대조 확인본)
- ※ 자녀의 외국 중·고교 재학기간과 일치하는 자격기간에 해당하는 서류에 한함

1-3.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가.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나.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⑬ 보호자의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 사실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있을 경우 제외)

7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4.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가.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나.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⑬ 정부초청서 또는 추천서

2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2-1.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가.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나.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⑬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법인 등록증)
⑭ 해외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 자녀의 외국 중·고교 재학기간과 일치하는 자격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세금납부 증빙서류에는 해당자 성명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 ⑬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⑭ 해외 세금납부 사실 증빙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사서인증 불가)'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모집요강 19~21쪽 참조).

2-2. 자영업자의 자녀

가.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의 자녀

나.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⑬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법인 등록증)
⑭ 해외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법인세 납부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 자녀의 외국 중·고교 재학기간과 일치하는 자격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세금납부 증빙서류에는 해당자 성명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 ⑬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⑭ 해외 세금납부 사실 증빙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사서인증 불가)'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모집요강 19~21쪽 참조).

7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2-3. 선교사의 자녀

가. 지원자격(아래 사항 모두 해당자)

- 1) 국내, 국외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에서 해외로 파견된 선교사의 자녀
- 3) 해당 법인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선교사의 자녀

나.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⑪ 종교단체의 국내 법인등록증 사본 (해당 종교단체 원본대조필 확인)
- ⑫ 종교단체장이 발급하고, 법인 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선교사 파견사실 확인서 (선교국 및 파견기간 명시)

|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정원 제한없음) |

1 지원자격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제출서류

제출서류

- ① 서류심사 신청서(본교서식)
- ②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학년 및 재학기간(전입일자, 전출일자 포함) 기재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0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최종학기 성적이 반영되어 있는 성적증명서 제출
 - ※ 재학기간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재학(사실)증명서 제출
- ③ 외국학교 학사일정(School Calender) 또는 학제 관련 서류
 - ※ 해당 외국학교의 학기 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 가능(홈페이지 출력 시 웹사이트 주소 표기)
- ④ 학력조회 동의서(본교서식, 본인이 재학한 외국소재 중·고교 수 만큼 작성)
- ⑤ 출입국 사실증명서 (학생)
- ⑥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학생)
- ⑦ 신분증 사본 (학생)
- ⑧ 여권 사본 (학생)
- ⑨ 외국국적증명서 (외국인에 한하여,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⑩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주 외국인에 한함)

※ ②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사서인증 불가)’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모집요강 19~21쪽 참조).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모집요강 19~21쪽 참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새터민(정원 제한없음, 단 교육학과는 1명 모집) |

1 지원자격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 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출서류

제출서류

- ① 서류심사 신청서(본교서식)
- ② 초·중·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
 - ※ 학년 및 재학기간(전입일자, 전출일자 포함) 기재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0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최종학기 성적이 반영되어 있는 성적증명서 제출
- ③ 외국학교 학사일정표(School Calender. 홈페이지 출력물(웹사이트 주소 기재), 브로셔 등 가능)(해당자)
- ④ 학력조회 동의서(본교서식, 외국소재 중·고교 출신자에 한하며, 본인이 재학한 외국소재 중·고교 수 만큼 작성)
- 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청 발행)
- ⑥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⑦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시·군·구청 발행) (해당자)
- ⑧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시·도 교육청 발급) (해당자)
- ⑨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해당자)

※ ② 외국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사서인증 불가)’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모집요강 19~21쪽 참조).

⑧ 전형방법 및 고사내용

| 전형방법 |

1 재외국민(56명 선발)

모집단위	전형형태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필답고사			면접고사	실기고사	계
			국어	수학	영어			
인문계, 체육대학	일괄합산	100%	50% (500점)	-	50% (500점)	-	-	100% (1,000점)
자연계	일괄합산	100%	-	50% (500점)	50% (500점)	-	-	100% (1,000점)
조형대학	일괄합산	100%	-	-	-	100% (1,000점)	-	100% (1,000점)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일괄합산	100%	-	-	-	-	100% (1,000점)	100% (1,000점)

※ 필답, 면접 및 실기고사 실시 후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각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5배수와 10명 중 많은 수로 서류심사대상자를 정함.
(단, 선발인원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서류심사 대상자로 정함)

2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새터민

모집단위	전형형태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면접고사	실기고사	계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	일괄합산	100%	100% (1,000점)	-	100% (1,000점)
조형대학	일괄합산	100%	100% (1,000점)	-	100% (1,000점)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일괄합산	100%	-	100% (1,000점)	100% (1,000점)

※ 면접 및 실기고사 합격자는 전원 서류심사대상자로 정함

| 고사내용 |

1 필답고사

가. 과목별 총점 반영비율

전형구분	모집단위	필답고사			합계	비고
		국어	수학	영어		
재외국민	인문계, 체육대학	50% (500점)	-	50% (500점)	100% (1,000점)	※전 문항 객관식 4지 선다형 ※문항수 국어, 영어 : 각40문항 수학 : 25문항
	자연계	-	50% (500점)	50% (500점)	100% (1,000점)	

나. 고사시간 및 출제범위

전형구분	모집단위	고사과목			출제범위
		국어	수학	영어	
재외국민	인문계, 체육대학	10:00~11:00 (60분)	-	11:30~12:30 (60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자연계	-	10:00~11:00 (60분)	11:30~12:30 (60분)	

※모집단위 별 해당 고사과목 중 어느 한 과목이라도 응시하지 않은 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⑧ 전형방법 및 고사내용

2 면접고사

모집단위	면접고사 내용 및 배점					비고
	기본소양 I	기본소양 II	작품집			
조형대학	25% (250점)	-	75% (750점)	작품수준	250점	[원서접수 시 작품집 제출 안내] ※ 원서접수 단계에서 면접 시 지참할 작품집을 1개의 PDF 파일(10MB 이내)로 변환하여 등록해야 함 (미등록 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면접고사 시 작품집 지참 안내] ※면접 시 작품집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미지참 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 유의사항: 지원자 식별 가능한 표식 절대 금지 • 조형대학 작품집 규격 - 작품: 평면/입체작품 10점 이내 - 규격: 작품 1점당 A3 이내의 인쇄물/출력물 1장 기준
				전공지식	250점	
				표현력	250점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 (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새터민)	50% (500점)	50% (500점)	-			※기본소양 I, 기본소양 II • 출제내용: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 • 평가내용: 수험생의 기본 자질 및 품성 등 평가 • 면접방법: 출제된 문제 열람 후 질의응답 형식의 개별 구술면접

3 실기고사

·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실기내용	배점			비고
자유연기 독백, 혹은 연기적 표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 또는 움직임	100% (1,000점)	연기력	500점	※실기고사는 배경음악 및 반주 없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의상은 반드시 흰색과 검은색만 착용 가능함
		표현력	500점	

⑨ 최종선발기준

- 1 일괄합산 전형을 실시하며, 각 모집단위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에 따른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 2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와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은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하며, 지원자의 수학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단, 교육학과는 새터민 자격으로 1명만 모집함)
- 3 필답·면접고사 또는 실기고사 결시자(응시포기자 포함), 서류 미제출(미비)자, 본교가 정한 지원자격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4 면접고사에서 'F' 판정을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5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합격자는 모집단위의 예비 순위에 따라 합격 처리합니다.
(모집요강 24쪽 참조)
- 6 각 모집단위별 전형총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구 분	동점자 처리기준
인문계, 체육대학	1. 국어 필답고사 성적 우수자 2. 국어 필답고사 고배점 문항의 득점이 많은 자 3. 영어 필답고사 고배점 문항의 득점이 많은 자
자연계	1. 수학 필답고사 성적 우수자 2. 수학 필답고사 고배점 문항의 득점이 많은 자 3. 영어 필답고사 고배점 문항의 득점이 많은 자
조형대학	1. 면접고사 작품수준 성적 고득점자 2. 면접고사 전공지식 성적 고득점자 3. 면접고사 표현력 성적 고득점자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1. 실기고사 연기력 성적 고득점자
교육학과(새터민)	1. 기본소양 I 면접고사 성적(환산점수) 고득점자

10 서류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

1 서류심사 대상자

- 가. 재외국민 : 필답, 면접 및 실기고사 전형총점의 성적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5배수와 10명 중 많은 수
나.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새터민 : 면접 및 실기고사 합격자

2 서류 제출기간 : 2020.08.12.(수) ~ 08.14.(금)

3 제출방법

- 가. 우편제출 : 등기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제출기간 내 국내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02707)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정릉동) 국민대학교 입학전형본부
※ 등기우편 영수증은 배송확인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함
- 나. 방문제출 : 추후 공지 예정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다. 서류 제출대상자는 반드시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해야 함(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자격미달 처리 됨)

4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 1)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본교 서류 제출처에서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단, 최종 합격자는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함).
- 3) 해외에서 발급하는 아래의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사서인증 불가)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1. 초·중·고교 재학, 성적, 졸업(예정)증명서	2. 보호자의 재직 관련 증명서
3. 보호자의 세금 납부 관련 증명서	4. 보호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생의 재학 관련 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사실 증명서, 고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발급을 면제하므로 해당 증명서만 제출함

- 4) 국내학교 졸업(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2020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최종 합격자는 입학일 전까지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6) 외국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전입, 전출일자 포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학(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7) 학력조회 동의서는 재학한 외국 소재의 중·고등학교 수 만큼 작성해야 하며 '학교정보-이메일'에는 해당 외국 학교의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국외 거주 또는 재학했던 국가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9)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10) 제출서류상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서류별로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해당국 법원이나 재외공관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1) 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2) 비자발급용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경우 유학비자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 13) 성적 및 재학기록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 또는 한국의 교육청에 준하는 정부기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14) 근무·체류 등 모든 서류는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서류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

15) 보호자의 자격 기준이 두가지 이상일 경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17.02.01.~2019.02.01. 해외파견근무 / 2019.02.02.~ 2020.03.02. 현지법인근무]

위의 경우 2019.02.01.까지는 해외파견근무자의 자격 서류를, 2019.02.02.부터는 현지법인근무자의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함

16) 졸업일 기준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는 최종 합격자 (2021년 2월 졸업자, 일본 등 일부 지역은 3월 졸업자)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제출서류(보호자의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졸업일 시점에 맞추어 추가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이 취소되며, 이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17) 부모 근무국의 지역 종교 체제(공산권 국가 등)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국 수학인정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격별 유의사항

1) 해외 파견근무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 : ‘본사 발급분’만 인정하며 파견국가 및 파견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지사 설치인증서 사본 또는 해외직접투자승인(허가)서 사본 : 근무 시작일 이전 신고 된 서류만 인정하며 반드시 본사 또는 은행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와 해외지사 설치인증서(해외직접투자승인서 포함)상의 회사명이 다른 경우 동일 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의 자녀

- 재직증명서 : 재직 중인 해당국 기관 발급(지사 소속인 경우 해당국 지사 발급)분만 인정하며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계약서 또는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현지 법인등록증 : 해당국에서 발급받은 법인등록증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 법인등록일이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현지법인 대표일 경우 ‘법인등록증’에는 대표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폐업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 현지법인 대표 : 법인세 납부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제출
 - ※ 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 :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제출
 - ※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는 연도별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반드시 지원자의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상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면세자 등 세금납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국 세무법령 및 본인이 그에 해당한다는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의 자녀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등록일은 ‘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기간’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에 보호자의 이름이 대표 또는 공동투자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금납부 사실 증빙서류 :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면세자 등 세금납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국 세무법령 및 본인이 그에 해당한다는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서류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

※ 아포스티유 협약 안내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개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생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17개국(2019. 05. 14. 기준)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18개국)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필리핀
유럽 (52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1개국)	미국
중남미 (30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프리카 (1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5개국)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계	117개국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07.14
-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서 관련 문의 : 외교부 관련 홈페이지(<http://www.0404.go.kr>)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 T: 02-2002-0251~2 / F: 02-2002-0294



서류 위·변조,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합격(입학)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11) 지원자 유의사항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사항

- 1) 복수지원 허용: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6개 전형 이내에서만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2) 복수지원 금지사항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를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됩니다.
 - 전형이라함은 정원 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 모든 전형을 의미합니다.
 - 지원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유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총원 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모든 대학의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됩니다.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3)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등록확인 예치금 납부기간 포함) 내에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는 대학에 등록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총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총원 합격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총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 합격 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 1)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 등록사항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취소됩니다.
- 2)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부정입학자에 대한 조치

- 1)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 위 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 3) 본교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위 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대학입학 전형원칙

가. 입학전형 성적 및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지원자 유의사항

나. 필답/면접/실기고사에 결시(포기)한 자는 입학전형 사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2021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가 2021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단, 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3 본교 지원 관련 사항

가. 본교 수시모집 각 전형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간에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 본교 수시모집 전형에 중복 합격 시 반드시 1개 전형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다.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합니다.

라. 입학원서 및 서류심사 신청서에는 전형 및 심사기간 중 연락 가능한 지원자의 국내 연락처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였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교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원자는 연락처 변동이 있을 경우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의 '재외국민-공지사항=지원자 정보수정'을 통해서 반드시 변경해야 함

마. 필답, 면접 및 실기고사에 대한 별도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2020.07.29.(수) 10:00(예정)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의 '고사장 안내'를 통해 수험생의 고사 일시를 확인하여 고사 당일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 고사 시작시간 이후 도착자는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음

바. 전형일 당일 수험표(원서접수 완료 후 출력)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사진이 부착된 청소년증(국내 고교 재학생에 한함)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

※ 수험표가 없으면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음

아. 조형대학 지원자는 면접고사 시 원서접수 단계에서 등록한 작품집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작품집 미지참자는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자.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본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카. 본교 제출서류는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추후 서류 위·변조,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이 취소되며, 이 경우 납부한 등록금(등록확인예치금 포함)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타. 2021년 2월 졸업예정자가 2021년 2월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1년 2월 말일로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한국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초과인정

파.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및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12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별도의 합격통지서 교부는 없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장학금과 관련하여 해당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출력하여야 하며, 추후 출력 불가함).
-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전화번호 및 주소) 오류나 3회 전화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락 두절 등으로 총원합격 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 총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합격자 확인,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등록확인 예치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자동 취소됩니다.
- 등록금 완납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합격자 유의사항에 포함되어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총원 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1 최초 합격자 발표

가. 발표 일시 : 2020.09.25.(금) 17:00 예정

나. 발표 방법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kookmin.ac.kr)

2 미등록 총원 합격자 발표

가. 총원 합격자 발표기간 : 2021.01.01.(금)~01.04.(월) 21:00까지

나. 총원 합격자 등록기간 : 2021.01.01.(금)~01.05.(화) 일자별 등록시간은 추후 공지

※ 총원 합격자 발표방법 및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총원 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13 합격자 등록금 납부

1 합격자 등록일자

구 분	최초 합격자	총원 합격자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2020.12.28.(월) 09:00 ~ 12.30.(수) 16:00	2021.01.01.(금) ~ 01.05.(화) (일자별 등록시간은 추후 공지)
등록금 완납	2021.02.08.(월) 09:00 ~ 02.10.(수) 16:00	

※ 자세한 등록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유의사항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 등록 관련 유의사항

가.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마감일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총원합격자 포함)에는 합격이 자동 취소되며, 이 경우에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대학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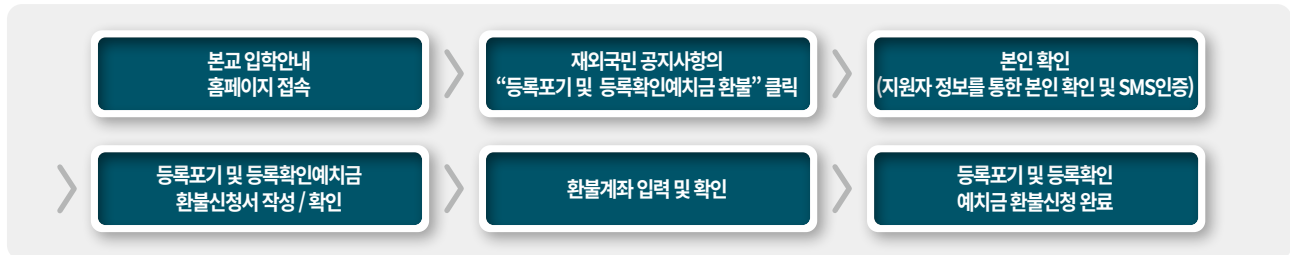
나. 등록금 완납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합격자 유의사항에 포함되어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입학)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에 등록금(등록확인 예치금 포함)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합니다.

14 등록금 환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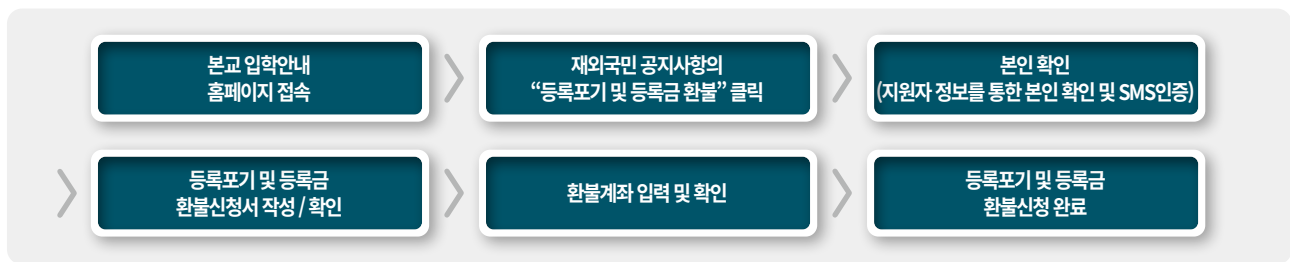
1 등록확인 예치금 환불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했으나, 합격을 포기하고 납부한 등록확인 예치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1.01.04.(월) 16:00 이전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환불신청을 해야 하며, 만일 이 기간 이후에 환불할 경우 차순위 예비 순위자의 대학 입학기회가 좌절되니 이 점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 환불

등록금 완납 후 등록을 포기하고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1.02.15.(월) 16:00까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등록포기(환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5 전형료

모집단위	전형료(원)		
	인문계, 자연계, 체육대학	조형대학	공연예술학부 연극전공
재외국민	150,000	130,000	150,000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130,000		
새터민(북한이탈주민)	70,000	70,000	90,000

※ 새터민은 서류심사비 면제

16 전형료 환불

1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사 응시가 불가능함을 신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아래 전형 포기 신청기간에 따라 전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사유 : 천재지변, 질병, 본고 고사일자 사후 변경, 본고 고사일자를 확정 공지하지 않은 면접/실기고사 전형 지원자 중 타 학교와 전형일 중복으로 응시가 불가능한 자 (단,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등

※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

전형 포기 신청기간	환불금액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전형료에서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원서접수 마감 다음날부터 전형일 1일 전까지	서류심사비 + 전형료(서류심사비 및 원서접수 수수료 제외 금액)의 50%
전형일 이후	환불금액 없음 (단, 고사 결시자는 서류심사비 환불)

2 서류심사 비대상자(고사 결시자 포함) 및 서류제출 대상자 중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비를 환불함 (※서류제출자 중 지원자격 미달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3 전형료 반환

가) 본고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 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나)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본고 직접 방문

다)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 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17 학사 안내

1. 신입생 장학금

국민대학교는 교내/외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혜택의 종류와 범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형별 신입생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생활관(기숙사) 안내

국민대학교 생활관은 교내를 비롯하여 교외 여러 곳에 있으며, 면학 분위기를 고양하고 진리 탐구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교내/외 추가 생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 교내 생활관 ☐ 교외 생활관 - 길음, 정릉, 제2정릉, 원릉 생활관



3. 통학버스 운행 안내

국민대학교는 서울 시내 주요 권역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주요 지하철, 버스 등 편리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1호선 시청역 ☐ 2호선 잠실역, 신촌역 ☐ 3호선 압구정역, 불광역
☐ 4호선 길음역 ☐ 5호선 광화문역



4. 국제교류 프로그램 안내

국민대학교는 국외대학 및 기관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차별화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선진 학문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얻음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창의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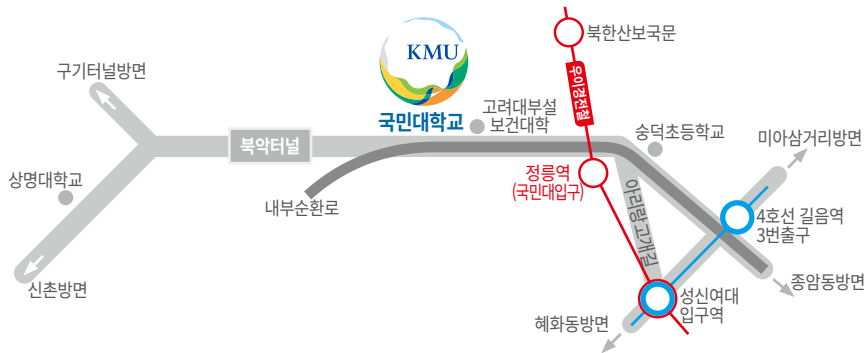
- ☐ 교환학생 ☐ 방문학생 ☐ 복수학위
☐ Sungkok Global Exposure 프로그램 ☐ 어학연수 프로그램 ☐ Global Peers 프로그램



5. 학사관련 부서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안내사항	부서명	전화번호	안내사항
국제교류팀	(02) 910-5803, 5806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 관련 업무	글로벌인문·지역대학	(02) 910-4353	각 단과대학 별 학부(과), 전공 소개
교무팀	(02) 910-4039	수강신청	사회과학대학	(02) 910-4423	
	(02) 910-4037, 4050	휴학, 전부(과), 증명서 발급	법과대학	(02) 910-4483	
재무팀	(02) 910-4156	등록금 수납 및 환불	경상대학	(02) 910-4513	
학생지원팀	(02) 910-4054, 4058	장학금, 학자금 대출	경영대학	(02) 910-5202	
병무지원팀	(02) 910-4722	병무	창의공과대학	(02) 910-4653	
생활관	(02) 910-5974	기숙사	소프트웨어융합대학	(02) 910-5283	
취업지원센터	(02) 910-4063~5	취업 및 진로	자동차융합대학	(02) 910-5502	
진로지원센터	(02) 910-4066~8		조형대학	(02) 910-4583	
출판부	(02) 910-4242	교양교재	과학기술대학	(02) 910-4793	
			예술대학	(02) 910-4463	
			체육대학	(02) 910-4883	
			건축대학	(02) 910-4112	

19 국민대학교 약도 및 교통편 안내



지하철 이용시

- 1.호선 종 각 역 → ①번 출구 → 1020번(교보문고 방면 200m) → 국민대
- 2.호선 신촌 역 → ①번 출구 → 110번(동교동 방면 250m)
- 3.호선 경복궁 역 → ③번 출구 → 1020, 1711번(자하문 방면 50m 아래) → 국민대
- 4.호선 길음 역 → ③번 출구 → 171,1213, 7211번 → 국민대
- 5.호선 광화문 역 → ②번 출구 → 1020, 1711번(한국통신 앞) → 국민대
- 3,6호선 연신내역 → ④번 출구 → 7211번 → 국민대
- 주요 경전철 정류(국민대입구)역

지선버스 이용시

- 1020번(정릉산장아파트 ⇄ 국민대 ⇄ 종로1가)
- 1116번(국민대 ⇄ 미아삼거리), 1213번(국민대 ⇄ 청량리)
- 1711번(국민대 ⇄ 광화문 ⇄ 공덕동), 7211번(기자촌 ⇄ 국민대 ⇄ 신설동)

간선버스 이용시

- 110번(국민대 ⇨ 제기동 ⇨ 용산 ⇨ 신촌 ⇨ 국민대), 153번(우이동 ⇨ 수유리 ⇨ 국민대 ⇨ 신촌 ⇨ 우이동)
- 171번(국민대 ⇨ 돈암동 ⇨ 성대앞 ⇨ 상암동)

내부순환로 이용시

- 일산 방면에서 왕십리 방향 이용시 : 정릉 Ramp 진출 후 U턴
- 왕십리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 이용시 : 국민대입구 Ramp 진출 후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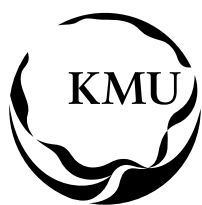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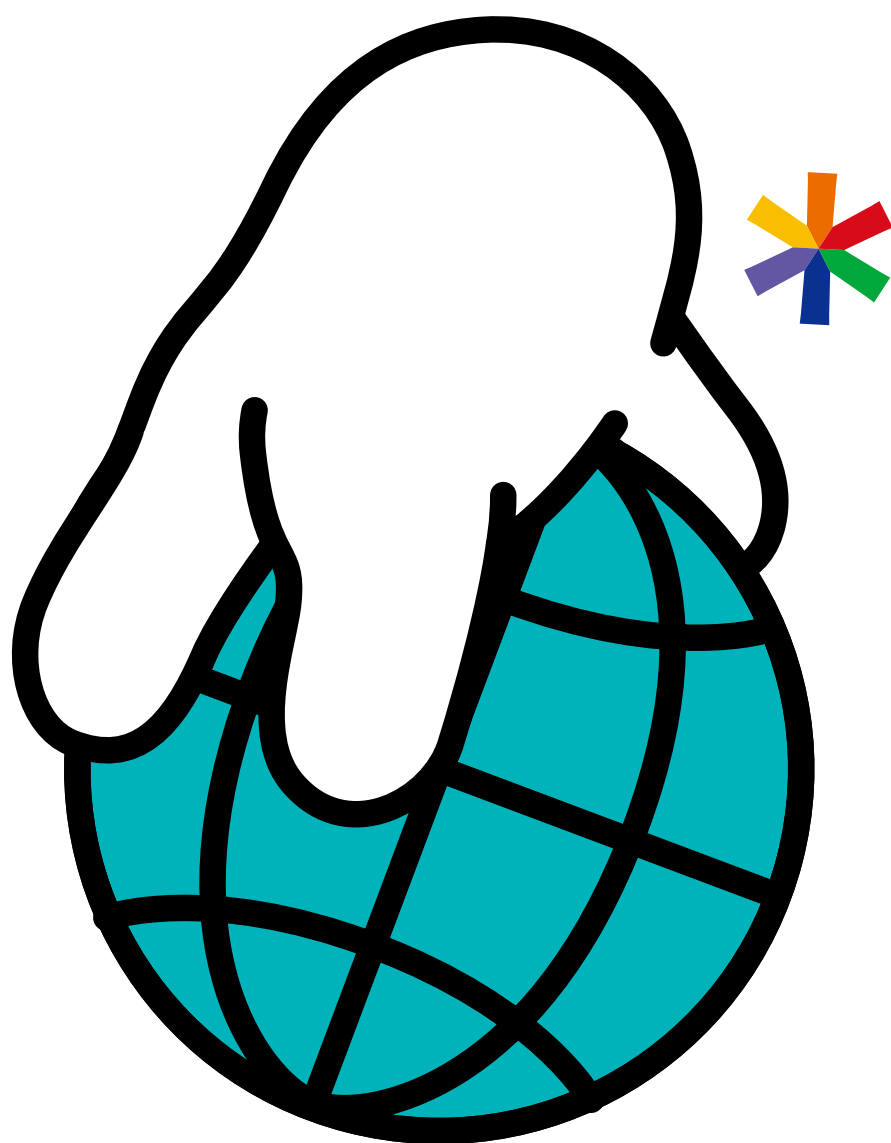


통학버스 이용시

- 1호선 시청역
- 2호선 잠실역, 신촌역
- 3호선 압구정역, 불광역
- 4호선 길음역
- 5호선 광화문역

입학 상담 및 문의

[국민대학교 입학처] 입 학 팀 TEL (02) 910-4124~9 / FAX (02) 910-4120



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